

#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및제출자 : 1997. 5. 31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2

다. 심 사 경 과 : 제59회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5차 도시산업위원회(97. 6. 21) 상정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교통행정과장 심 안 택)

### 가. 제안이유

'97. 2. 21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단위 세분화 : 30분 → 10분(안 제3조 제2항)
- 노상주차장 장애인·전용주차구획선 설치 의무화 : 20대 이상 주차장 50대 마다 1면(안 제8조 제2항)
- 도로, 공원등 공공시설 지하노외주차장 부대시설추가 : 근린생활, 자동차관련, 근린공공, 업무, 운동, 전시, 판매, 관람집회시설(안 제15조 제2항)
-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범위 설정 : 직선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 거리 400미터이내(제16조)
- 시설물 기능유지 부설주차장 규모 : 총 주차대수의 1/10이상(안 제18조)
-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및 일반이용에의 제공규정 신설 (안 제19조 제20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'97. 2. 21 부산광역시 조례가 개정,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광역시 조례 범위내로 적법하게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